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992. 12.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1월 24일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2년 11월 2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2. 12. 1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주 강 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세 입 예 산	46,670	45,323	1,347
세 출 예 산	31,379	30,094	1,285
이 월 예 산	15,291	15,229	62

□ 이월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15,291	5,119	5,378	174	4,620
일 반 회 계	15,229	5,119	5,378	163	4,569
특 별 회 계	62	—	—	11	5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 홍 복)

○ 세입예산분야

- 점차 팽창하는 지방자치 재정의 원활한 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이에 따른 구조개선 및 제도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 지방세적 성격의 국세는 지방세로 이양하고 시세와 구세간의 불균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함이 요청된다고 생각하며,
- 미수납중 특히 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변상금, 과태료와 과년도 세입부분에 대하여 차후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분야

- 익년도 이월사업비의 과다로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에서 사업비예산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으며,
- 또한 자치구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도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당해년도에도 불용액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특히 '91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용역비 예산액을 3회 추경에서 경정감하지 않으므로, 예산경비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립관리 주요사업 시설비는 본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서 증액하여 오히려 더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됨.

○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9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동 부속서류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 본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열거된 사항을 검사범위로 하여 자치구 의회의 결산검사등 착안사항과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검사하였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습

5. 토론요지 : 없 습

6. 심사결과 : 원안 승인 의결